정신질환자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콘텐츠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과 같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이용방법과 정신질환자의 치료비 지원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정신질환자 1
1. 정신질환자의 이해 4
1.1.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 알아보기 4
1.1.1.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4
1.2. 정신건강증진시설 알아보기 5
1.2.1.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류 6
1.2.2.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이용대상 8
2.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하기 10
2.1. 입원 또는 입소(入所)하기 10
2.1.1. 정신의료기관 입원 또는 정신요양시설 입소(入所)하기 10
2.1.2. 정신재활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하기 13
2.2. 생활하기: 보호 및 관리 14
2.2.1.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서 생활하기 14
2.2.2. 정신재활시설에서 생활하기 16
2.3. 퇴원 또는 퇴소(退所)하기 18
2.3.1.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퇴원 또는 퇴소(退所)하기 18
3.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받기 21
3.1. 치료비 지원받기 21
3.1.1. 지원 대상자 및 지원내용 21
3.1.2. 치료비 지원 신청, 지급 및 이의신청 23

1. 정신질환자의 이해

1.1.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 알아보기

1.1.1.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정신적인 문제로 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정신질환자”라고 합니다.

정신질환의 종류

▪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 정신질환의 종류에는 알코올 사용장애, 니코틴 사용장애, 약물의존, 약물남용,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 등이 있습니다(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1년도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 38쪽 참조).

※ 정신질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www.mentalhealth.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신장애인”의 개념

- 다음의 장애·질환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정신장애인”이라고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제8호).
  - ·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및 재발성 우울장애
  - ·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

※ 정신장애 정도의 판정기준 및 정신장애인의 장애인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장애인 편의·건강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상 후견인이나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되지만,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

▪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단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및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고시」 제3조).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 미성년자
- 행방불명자
- 그 밖에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 √ 고령·질병·장애 등으로 보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사의 소견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 √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 √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 √ 3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경우
  -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 가출 또는 실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 ※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등 후견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후견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후견인·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르며,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에 따릅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민법」 제976조).

- 부양의 의무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 부양을 할 사람의 순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이를 정합니다.
-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이를 정합니다.
- 법원은 여러 명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Q. 정신질환 환자의 배우자가 환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경우, 그 배우자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나요**
>
> A. 이혼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경우라도 “소송이 계속중인 자”가 아닌 것 뿐이지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에 해당되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협의이혼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소송이 아니므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133쪽)

1.2. 정신건강증진시설 알아보기

1.2.1.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류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하거나 입소(入所)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류

▪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 “정신의료기관”이란 정신병원, 의료기관 중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

> ※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신요양시설”이란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 “정신재활시설”이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기질성 정신장애,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조현병 또는 망상장애, 기분장애, 정서장애, 불안장애 또는 강박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함)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10).

종류		사업
1. 생활시설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등에게 주거, 생활지도, 교육, 직업재활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으로의 복귀, 재활, 자립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시설
2. 재활 훈련시설	주간 재활시설	정신질환자등에게 작업·기술지도,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공동 생활가정	완전한 독립생활은 어려우나 어느 정도 자립능력을 갖춘 정신질환자등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독립생활을 위한 자립역량을 함양하는 시설
	지역 사회전환시설	지역 내 정신질환자등에게 일시 보호 서비스 또는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했거나 퇴원계획이 있는 정신질환자등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위한 주거제공, 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직업 재활시설	정신질환자등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적응, 직무기능향상 등 직업재활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직업능력을 갖추면 고용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	정신질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중독자재활시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4. 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등이 생산한 생산품을 판매하거나 유통을 대행하고, 정신질환자등이 생산한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상담, 홍보, 마케팅, 판로개척,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시설
5. 종합시설		위 1.부터 4.까지의 정신재활시설 중 2개 이상의 정신재활시설이 결합되어 정신질환자등에게 생활지원, 주거지원, 재활훈련 등의 기능을 복합적·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시설

- 정신건강 관련 시설로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외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하는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국가트라우마센터(www.nct.go.kr):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참조)

√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 참여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제1항 참조)

※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www.mentalhealth.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2.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이용대상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대상

▪ 정신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 참조).

- 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 정신질환자로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하고자 하는 사람
- 정신질환자로서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입원을 신청한 사람
-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

▪ 정신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146쪽).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사람으로서 본인이 해당 시설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사람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사람으로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로서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시설 입소를 신청한 사람

※ 기존 장애인시설 등 다른 입소생활시설에 거주했던 사람은 원칙적으로 입소가 제한됩니다(다만, 정신질환 소견서가 있고, 촉탁의사에 정신요양시설 입소 필요 소견이 있는 경우,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입소 가능).

▪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182쪽).

▹ 만 15세 이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조현병, 양극성 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 정신질환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하고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적은 사람

√ 다만,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 시설의 경우 아동 및 청소년 관련법상 연령기준을 따름

▹ 알코올 사용장애를 동반한 정신질환자 및 만 15세 미만의 소아정신질환자는 특별프로그램을 분리·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소·이용 가능

▹ 정신질환을 동반하는 경우 지적장애인 입소 가능

▹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주치의가 기능상의 장애로 인해 사회적응훈련을 포함한 정신재활시설의 입소 및 이용을 특별히 의뢰하는 경우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이용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하기

2.1. 입원 또는 입소(入所)하기

2.1.1. 정신의료기관 입원 또는 정신요양시설 입소(入所)하기

정신질환자는 자의(自意)로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 또는 입소(入所)할 수 있습니다.

자의로 입원 또는 입소하는 경우

▪ 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의·동의입원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함)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자의로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및 별지 제14호서식).

-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1부(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려는 경우만 해당)
- 수급자 증명서 1부(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려는 경우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만 해당)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 또는 입소하는 경우

▪ 정신질환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자의·동의입원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전자문서를 포함)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지 제14호서식).

-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1부(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려는 경우만 해당)
- 수급자 증명서 1부(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려는 경우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만 해당)

> **Q1.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자의입원이 가능한가요**
>
> A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미성년자의 자의입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미성년자라고 하여 자의입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 및 판단능력이 있다고 전문의가 인정하는 경우 보호의무자의 확인을 거쳐 입원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 (출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5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 안내』, 196쪽)
>
> **Q2. 외국인인 경우에도 입원이 가능한가요?**
>
> A2.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본법의 취지에 따라 외국인도 입원을 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 등). 다만, 외국인등록

>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여권 등과 환자 본인의 얼굴을 대조하여 본인 확인 후 입원이 가능합니다.
>
> (출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5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 안내』, 233쪽)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신청하여 입원 또는 입소(入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입원 또는 입소하는 경우

▪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함)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전단).

▹ 입원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는 보호입원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를 첨부해서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후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진단 결과서가 포함된 입원등 권고서 1부

√ 수급자 증명서 1부(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려는 경우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만 해당)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등 필요성에 관한 진단은 해당 정신질환자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각각에 관한 진단을 적은 입원등 권고서를 입원등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정신질환자가 위 모두 해당하여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단 결과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국립·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위한 입원등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및 제4항).

입원등의 기간 및 기간 연장

▪ 보호의무자의 신청에 따른 입원등의 기간은 최초로 입원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5항 본문).

▹ 다만, 다음 구분에 따라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5항 단서).

√ 3개월 이후의 1차 입원등 기간 연장: 3개월 이내

√ 위 1차 입원등 기간 연장 이후의 입원등 기간 연장: 매 입원등 기간 연장 때마다 6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입원등을 한 사람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8항).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입원등 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항 전단).

▹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국립·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가 입원등 기간을 연장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일치된 진단을 하는 경우

▹ 정신질환자의 입원등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이하 "신청 보호의무자"라 함) 2명 이상(입원등 신청 시 신청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었던 경우에는 1명으로 함)이 입원등의 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 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기간 만료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입원기간 만료일 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연장에 대한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항 후단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 기간 연장의 심사 청구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일시적으로 퇴원등을 시킨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입원등 여부를 결정하는 조치를 말함) 명령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신질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을 시켜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7항).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 또는 신청 없이 입원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입원하게 하는 경우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말함)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제2항).

▹ 경찰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을 말함)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의뢰해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함)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서 입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입원 사유·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5항).

▪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6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진단 결과 그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7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입원 의뢰를 한 때에는 그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하여 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8항).

응급입원하는 경우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로 하는 입원등,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입원등,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하는 입원등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함)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응급입원한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해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 및 제4항).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위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6항).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자의로 하는 입원등,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입원등,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하는 입원등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2.1.2. 정신재활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하기

정신재활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입소(入所)하여 생활하거나, 입소(入所)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 정신재활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하려는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기질성 정신장애,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조현병 또는 망상장애, 기분장애, 정서장애, 불안장애 또는 강박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함)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의 유무를 확인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9제1호가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정신재활시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다른 정신질환자에 우선하여 입소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9제1호다목).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기초생활보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신재활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는 입소 또는 이용하려고 할 때 제출한 진단서가 속한 연도의 다음 해부터 입소·이용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과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건강검진을 받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9제1호나목 참조).

정신재활시설의 이용기간

▪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 중 공동생활가정 또는 지역사회전환시설의 입소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9제6호다목 본문).

▸ 다만,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고령,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소자의 퇴소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3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입소자가 무연고자이거나 보호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회를 초과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9제6호다목 단서).

> ※ 정신재활시설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정신질환자의 이해-정신건강증진시설 알아보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 생활하기: 보호 및 관리

2.2.1.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서 생활하기

입원 또는 입소자(入所者)의 권익은 보호되고, 포괄적인 제한은 금지됩니다.

입원 또는 입소자의 권익보호

▪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녹음·녹화 또는 촬영을 해서는 안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함)를 하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 CCTV(감시카메라)는 화재감시 혹은 병동내 격리실, 중증 환자 병실 등 일부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운영하되, 촬영범위를 최소화해야 하며, CCTV 설치 사실 및 보존기간 원내 환자 및 보호의무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122쪽).

입원 또는 입소자에 대한 제한의 금지

▪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해서는 안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제2항).

▪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함)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격리는 해당 시설 안에서 해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제2항 후단).

입원 또는 입소자(入所者)에게 작업치료를 할 수 있지만, 특수치료는 제한됩니다.

작업치료의 실시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의 치료, 재활 및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다음에 따라 단순기능 작업을 시킬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2항)

▹ 작업 시간

√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실시하는 경우: 1일 6시간 이내 및 1주 30시간 이내

√ 정신의료기관등이 아닌 외부에서 실시하는 경우: 1일 8시간 이내 및 1주 40시간 이내

▹ 작업 장소: 직업재활훈련실 등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실시

▪ 위 작업은 입원등을 한 사람 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시켜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 본문).

▹ 다만,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말함)이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 단서).

특수치료의 제한

▪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한 사람에 대한 전기충격요법·인슐린혼수요법·마취하최면요법·정신외과요법, 정신질환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체일부절제술 및 정신질환증상을 교정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혐오자극법은 그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하되,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특수치료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 본문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다만,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한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 단서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2항).

정신요양시설 입원 또는 입소자(入所者)는 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른 식사를 제공받습니다.

입원 또는 입소자의 건강관리

▪ 입원 또는 입소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료 및 처방 등을 적정하게 받을 수 있고,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검진을 매년 받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151쪽~152쪽).

▹ 입원 또는 입소자가 합병증 등의 질환이 발생하거나 중증의 환자인 경우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152쪽).

▪ 입원 또는 입소자의 건강유지와 정서함양 및 효과적인 요양을 위해 일정표에 따른 적절한 운동과 오락 등 규칙적인 생활이 제공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152쪽).

입원 또는 입소자의 영양 및 위생관리

▪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적정수준의 급식이 제공되며, 주 1회 이상(6월에서 8월까지는 주 2회 이상) 목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152쪽).

> ※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서의 생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2. 정신재활시설에서 생활하기

입소(入所) 또는 이용자는 직원과 함께 생활하며, 재활활동을 해야 합니다.

입소 또는 이용자의 생활

▪ 입소자는 거실이나 입소자의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말함),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관리인 또는 그 밖의 직원 1명과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26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9제6호가목 본문).

▹ 다만, 생활시설, 중독자재활시설 등 기질성 정신장애,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조현병 또는 망상장애, 기분장애, 정서장애, 불안장애 또는 강박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함)이 상시 거주하는 시설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해당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직원이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9제6호가목 단서).

▪ 재활훈련시설 중 공동생활가정 또는 지역사회전환시설의 입소자는 주간에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거나,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9제6호라목 본문).

▹ 다만,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9제6호라목 단서).

입소 또는 이용자의 재활활동

▪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입소 또는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관리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며 정신질환을 치유할 수 있도록 사회재활활동 및 직업재활활동을 실시해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9제7호가목).

▹ "사회재활활동"이란 정신질환자등의 일상생활 관리, 사회적응능력 향상 또는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개별 또는 집단활동으로서 다음의 활동을 말합니다.

√ 사회기술 및 일상생활기술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 약물 및 증상 관리를 포함한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 스트레스 관리 및 긴장 완화를 위한 교육 및 체험활동

√ 동료상담 등을 통한 소통, 여가 및 문화활동

√ 정규학교 및 지역사회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활동

▹ "직업재활활동"이란 어느 정도 작업능력이 있는 정신질환자등의 작업능력향상과 직업재활을 위해 정신재활시설 내·외부에서 실시하는 활동으로서 다음의 활동을 말합니다.

√ 단순 반복적인 작업훈련을 포함하는 보호작업

√ 고용 촉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작업훈련

√ 취업 알선 및 취업 지도 활동

√ 취업자의 직업 유지 및 관리활동

√ 정신재활시설 내·외부에서 물품을 생산하거나 생산품을 판매하는 활동과 관련된 제반 활동

▪ 직업재활활동을 실시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일 8시간, 1주당 40시간을 넘지 않게 해야 하며, 직업재활활동으로 얻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든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직업재활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각 개인별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9제7호나목 참조).

정신재활시설에서는 입소(入所) 또는 이용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른 식사를 제공합니다.

입소 또는 이용자의 건강관리

▪ 입소 또는 이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고, 정신질환 이외의 합병증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받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186쪽).

▹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입소·이용자의 인적 사항과 증상을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하고, 입소·이용자에게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식을 제공해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9제2호).

▪ 입소 또는 이용자는 건강유지와 효율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일정표에 따른 적절한 운동 등 규칙적인 생활프로그램을 제공받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152쪽).

입소 또는 이용자의 영양관리

▪ 정신재활시설의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며,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의 지도를 받아 작성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9제3호가목).

2.3. 퇴원 또는 퇴소(退所)하기

2.3.1.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퇴원 또는 퇴소(退所)하기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퇴원 또는 퇴소(退所) 절차는 입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의로 입원 또는 입소한 경우

▪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함)의 장은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를 한 사람이 퇴원 및 퇴소(이하 “퇴원등”이라 함)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 ※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자의(自意)로 입원 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 요구가 있는데도 구 정신보건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 위법한 감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7134 판결)판례는 환자로부터 퇴원 요구가 있는데도 구 「정신보건법」 제23조제2항(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에는 위법한 감금행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 또는 입소한 경우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동의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본문).

▹ 다만,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단서).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위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 사유 및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입원 또는 입소한 경우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람을 퇴원등을 시켜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9항 본문).

▹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그 입원등을 한 사람이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9항 단서 및 제2항).

√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위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퇴원등을 시켰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 본인과 퇴원등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실 및 사유와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0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입원하게 한 경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최초로 입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원을 해제해야 하며, 입원의 해제 사실을 그 정신질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그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정신질환자를 퇴원시켜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후단).

Q.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최초로 입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원을 해제해야 하는데, "최초로 입원을 한 날"은 진단을 위한 입원을 한 날인가요, 아니면 치료를 위한 입원을 한 날인가요

A. "최초로 입원을 한 날"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에 따른 진단을 위하여 입원을 한 날로 봐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례 19-0735, 2020. 5. 11.)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진단하고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

▹ 최초로 입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후의 1차 입원 기간 연장: 3개월 이내

▹ 1차 입원 기간 연장 이후의 입원 기간 연장: 매 입원 기간 연장 시마다 6개월 이내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입원 기간을 연장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켰을 때에는 그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그 사람을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항).

응급입원한 경우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을 시킨 사람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참조).

정신재활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자는 본인이나 가족이 원하면 퇴소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퇴소 조치됩니다.

입소 또는 이용자의 퇴소 신청

▪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입소자가 공동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및 입소 또는 이용자와 그 가족이 해당 정신재활시설의 이용을 중단하거나 퇴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입소 또는 이용자 및 그 가족과의 상담을 통하여 이용을 중단하게 하거나 퇴소하게 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9제6호마목).

입소자에 대한 퇴소조치

▪ 입소자가 정신과 질환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중간에 퇴원 없이 연속적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와 입소자의 1회 외박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소자는 퇴소 조치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148쪽).

▹ 다만, 무연고자 등의 사유로 퇴소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소 및 이용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진단과 운영위원회의 심의(환자의 정신건강상태, 주변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를 거쳐 퇴소 조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149쪽).

3.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받기

3.1. 치료비 지원받기

3.1.1. 지원 대상자 및 지원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치료비가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치료비의 종류

▪ 정신질환으로 제때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다음 사람은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에서 정신질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5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5. 3.), 9쪽].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사람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을 받은 사람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 지원받을 수 있는 치료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2025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7쪽).

종류	내용	선정기준
응급입원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전 국민 (건강보험가입자)
행정입원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진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외래치료지원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중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통지를 받은 대상자의 치료 유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자·타해 위험으로 비자의입원을 한 적이 있는 사람 - 자·타해 위험으로 입원 또는 외래치료 중 치료를 중단한 사람	
발병 초기정신질환	최근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 일부'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지원받는 치료비는 지원 대상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의 치료비 지원항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10쪽).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수급자 증명서 내 수급자 구분 항목 중 ´생계급여(일반·조건부) 수급자´에 체크된 경우 식대

지원은 제외됩니다(『2025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10쪽).

▪ 차상위 계층은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11쪽).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및 중위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기초생활보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치료비 지원항목

▪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원종류에 따라 지원항목이 달라집니다(『2025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11~13쪽).

▹ 응급입원, 행정입원 및 외래치료의 치료비는 지원 항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이 지원됩니다.

▹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 항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이 지원됩니다.

▪ 건강보험 미납자 및 미가입자는 미납대금 납부 및 건강보험 가입,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민등록 재등록 후 치료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025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15쪽).

▹ 다만, 정신과적 증상으로 자·타해 위험성이 현저히 높아 주변인에게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며,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장(기초·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의 추천으로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지원될 수 있습니다(『2025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15쪽).

외국인의 치료비 지원항목

▪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가입자를 대상으로 본인일부부담금만 지원하며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2025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13쪽).

▹ 응급입원, 행정입원 및 외래치료 지원의 경우에는 소득기준 상관없이 본인일부부담금이 지원되며, 외국 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상실, 국외 이주자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발병초기 정신질환·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기초 및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대상자로 등록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외래치료지원 대상자는 정신건강의학과에 외래진료를 받는 일반 대상자도 치료비 지원대상자인가요

A. 아닙니다. 외래치료지원 대상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라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대상자입니다.

(출처: 『2025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40쪽).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1.2. 치료비 지원 신청, 지급 및 이의신청

치료비 지원 신청은 치료비 납부 전 또는 납부 후에 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 신청 및 지급

▪ 치료비 지원요건에 해당하지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응급, 행정, 발병 초기 대상자도 치료비 발생 180일 내에 신청할 경우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2025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5. 3.), 20쪽].

▪ 지원 대상자가 치료비를 납부하기 전에 치료비 지원 여부가 결정 또는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퇴원 또는 귀가하면 됩니다(『2025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2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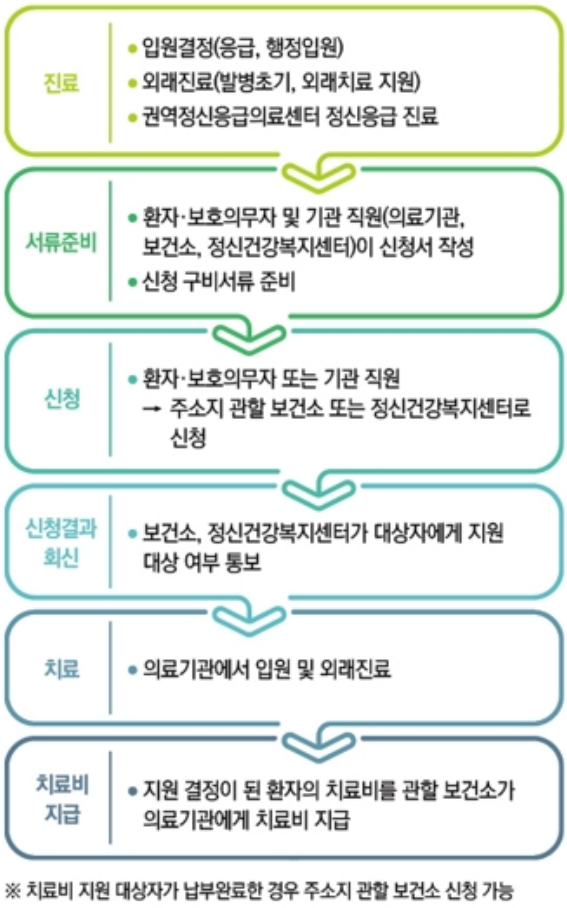
▹ 지원 대상 치료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하여 수령합니다(『2025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20쪽).

▪ 지원 대상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 납부 영수증, 기납부한 대상 명의 통장 사본을 첨부해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급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20쪽).

▹ 치료비 지원 신청 중에 환자가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 결정 후 납부영수증을 첨부해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급 청구하면 됩니다(『2025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20쪽).

▹ 기납부한 환자 명의로 입금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기납부한 당사자(후견인, 가족, 친척 등) 명의 통장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2025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20쪽).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출처: 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리플릿)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2023)]

치료비 환수 및 차감

▪ 지원 대상자에게 과지급금이 있거나, 후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국가 지원금을 선지원 받아 이미 지급된 금액 중의 일부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 환수 사유에 해당합니다(『2025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56쪽).

▹ 이 경우 지원 대상자는 보건소 계좌로 반환해야 합니다(『2025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56쪽).

▪ 지원 대상자에게 과지급된 금액에 대해 환수조치가 어려운 경우, 추후 지원할 치료비에 대해서 환급대상 금액만큼 감액 처리됩니다(『2025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56쪽).

▹ 해당 연도에 더이상 치료비가 발생하지 않아 차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2025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56쪽).

치료비 지원 신청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을 신청 또는 치료비 지급을 청구한 사람은 다음의 사항에 대한 보건소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소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2025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56쪽).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 결정 사항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의 내용 또는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람

▹ 치료비 지원 대상자 중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명령을 받은 사람

▪ 이의신청자가 보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보건소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의신청위원회에 이를 상정하고,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심리·의결을 한 후 이의신청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등기로 발송합니다(『2025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57쪽).

이의신청에 대한 구제(救濟)

▪ 이의신청이 기각, 각하 또는 일부 인용된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025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57쪽).

>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